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별표 제1의2>”를 “<별표 1의2>”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2(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 등) ① 법 제46조제1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란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를 말한다.

②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법 제46조제1항제7호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인력·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별지 제5호에 따른 신고서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2. 금융이용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제한명령 및 시정명령은 그 내용 및 사유가 구체

적으로 적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명칭
2. 소유하고 있는 인력·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한 업무의 신고일
3. 신고한 업무의 개시 예정일 또는 개시일
4. 신고한 업무의 내용

⑥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업무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⑧ 신용카드업자는 제2항에 따른 업무의 매출액이 다음 각 호의 합계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속하는 수익·비용을 신용카드업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1. 가맹점수수료 수익
2. 카드자산과 관련한 이자 및 수수료 수익
3. 연회비 수익

<별표 1의2>의 제목 중 “제6조의18 관련”을 “제5조의2제1항 관련”으로 하고, <별표 1의3>을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를 붙임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별표 1의3]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위할 수 있는 업무

(제7조의2제2항 관련)

구분	업무
1. 신용카드업자	가. 통신판매, 여행업 및 보험대리점 업무 나. 카드(전자지급수단) 발급대행 및 결제시스템 제공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라.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 마. 상품권, 복권 등의 판매대행 및 소유설비 등을 활용한 광고대행 바. 업무와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판매·대여 사. 업무와 관련된 교육, 간행물 및 도서출판 아. 리스대상 물건에 대한 렌탈업. 다만, 물건별 렌탈자산의 분기중 평균잔액(미상각잔액)은 해당 리스자산의 분기중 평균잔액(금융리스채권잔액과 운용리스자산의 미상각잔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기간 동안의 단기 대여는 대여중인 물건이 정비, 수선 등의 사유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한다. 자. 기업의 경영지도 등에 관한 용역 및 경영관리 업무 차. 대출의 중개 또는 주선 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

	<p>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디자인권 및 상표권에 대한 실시권 또는 사용권의 설정</p> <p>파.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활용한 자문서비스</p> <p>하. 다른 신용카드업자가 신고한 후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공고된 업무와 동일한 업무</p>
2. 시설대여업자	<p>가. 제1호라목부터 파목까지에 해당하는 업무</p> <p>나. 다른 시설대여업자가 신고한 후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공고된 업무와 동일한 업무</p>
3. 할부금융업자	<p>가. 제1호라목부터 파목까지에 해당하는 업무</p> <p>나. 다른 할부금융업자가 신고한 후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공고된 업무와 동일한 업무</p>
4. 신기술사업금융업자	<p>가.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업무</p> <p>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p> <p>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p> <p>라.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투자(이 경우 투자규모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자기자본 범위 이내로 한다)</p> <p>마. 제1호라목부터 파목까지에 해당하는 업무</p> <p>바. 다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고한 후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공고된 업무와 동일한 업무</p>

[별지 제5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부수업무 신고서

부수업무 신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부수업무 신고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제1항제7호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를 신고합니다.

1. 부수업무의 내용

가. 목적 및 내용

나. 개시예정일자 및 영위장소

다. 영위방법

라. 인력 및 조직에 관한 사항

마. 제3자와의 업무제휴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등록·신고 등을 요하는지 여부

2. 부수업무의 영향분석

가. 여신전문금융업과의 관련성

나. 여신전문회사의 경영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다. 금융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라.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첨부서류: 당해 부수업무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7조의2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음에 대한 준법감시인의 검토의견

○ ○ ○ 대표이사 (인)

본점 소재지:
작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의2(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 ① 신용카드업자가 법 제46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는 인력·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p> <p>1. ~ 13. (생략)</p> <p>② 할부금융업자·시설대여업자·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는 인력·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위할 수 있다.</p> <p>1. ~ 15. (생략)</p> <p>③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신고하고자 하는 할부금융업자·시설대여업자·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별지 제5호의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7조의2(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 등) ① 법 제46조제1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란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를 말한다.</p> <p>②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법 제46조제1항제7호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인력·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별지 제5호에 따른 신고서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할 수 있다.</p> <p>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할부금융업자·시설대여업자·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청하고자 하는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부수업무의 영위를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2. 채무자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에 해당

1.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2. 금융이용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제한명령 및 시정명령은 그 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하는 등 중소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제한명령 및
시정명령은 그 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문서로 하여
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할부금융업자·
시설대여업자·신기술사업금융업
자가 제2항에 따라 소유하고 있
는 인력·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
한 업무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
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할부금융업자·시설대여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명칭
2. 소유하고 있는 인력·자산 또

⑤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신
고한 경우에는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
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
다.

1.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명칭
2. 소유하고 있는 인력·자산 또
는 설비를 활용한 업무의 신
고일
3. 신고한 업무의 개시 예정일
또는 개시일
4. 신고한 업무의 내용

⑥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인
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는 설비를 활용한 업무의 신고일

3. 신고한 업무의 개시 예정일
또는 개시일

4. 신고한 업무의 내용

⑦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한 경
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⑧ 제2항부터 제7항에 따른 업무
는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업무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
한다.

⑧ 신용카드업자는 제2항에 따
른 업무의 매출액이 다음 각 호
의 합계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속하는
수익·비용을 신용카드업과 구분
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1. 가맹점수수료 수익

2. 카드자산과 관련한 이자 및
수수료 수익

3. 연회비 수익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 사무관 박진애	
연 락 처	(02) 2156 - 9853